〈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 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http://www.worldplaytime.com

APPLE TREE

-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172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 04. 07◈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2024. 01. 04.

애 플 트 리

정 보 공 개 서

플레이타임중앙(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플 레 이 타 임 중 앙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 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 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주 소 :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수서동, 성우빌딩)
- ◈ 대표전화: 02-2226-0970◈ 팩 스: 02-3412-0971
-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팀 02-2226-0970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q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	브 랜 드	주 소					
	『애플트리	』외 11개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수서동, 성우빌딩)					
플레이타임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중앙(주)	2001. 3. 12.		2001. 3. 12.	이 재 원	기 재 원 02-2226-0970 02-34		02-3412-0971	
	법인등록번호 110111-2		2190885	사업자등록	번호	215-	86-0526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주 소					
		『애플트리』외 11개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수서동, 성우빌딩)					
대표이사	이 재 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511	이 재 원	02-2226-0970	02-3412-0971			
관 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주 소				
		FOUR END OF	서울 강남구 광평로51	길 6-27, 501호(수	서동, 성우빌딩)			
사내이사	홍 정 인	『애플트리』외 1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211	이 재 원	02-2226-0970	02-3412-0971			
관 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주 소				
	추 기 식	『애플트리』외 11개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수서동, 성우빌딩)					
사내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 재 원	02-2226-0970	02-3412-0971			
관 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주 소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수서동, 성우빌딩)					
감 사	박 휘 진	『애플트리』외 11개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7	이 재 원	02-2226-0970	02-3412-0971			
관 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주 소					
		사다그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6층(성수동1가, 메가박스스퀘어)					
계열회사	메가박스중앙 (조)	앙 스템 커피 (STEM COFFEE)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	(STEINI COLLEE)	홍 정 인	02-3017-3504	02-514-4135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애플트리』	
상표(서비스표)	APPLE TREE	출원번호 : 41-2007-0021935 등록번호 : 41-0173738-0000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 (: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0,398,115	42,759,869	17,638,246	32,712,471	(5,657,692)	(6,121,305)
2022년	53,997,051	33,858,989	20,138,062	51,984,650	983,727	1,941,570
2023년	55,296,881	35,932,768	19,364,113	58,083,348	5,726,865	(533,618)

- ※ 근거자료로 재무제표가 (*별지 1)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 업 경 력						
[원단어구	- 이 금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이재원	대표이사	2024.02.01. ~ 현재	플레이타임중앙(주) 대표이사	경영총괄				
가맹사업	홍정인	사내이사	2024.02.01. ~ 현재	플레이타임중앙(주) 사내이사	사내이사				
관련임원	추기식	사내이사	2023.03.01. ~ 현재	플레이타임중앙(주) 사내이사	사내이사				
	박휘진	감사	2024.02.01. ~ 현재	플레이타임중앙(주)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II 저	임 원	수(명)	직 원 수(명)
시 점	상근	비상근	의 면 T(8)
2023년 12월 31일	2	2	1,19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 계	상호/이름	사업내용	기간	사업내용
			2001. 03. 12.~현재	◈플레이타임 : 20090100171
			2005. 09. 08.~현재	◈키즈사이언스 : 20090100170
			2007. 09. 13.~현재	◈애플트리 : 20090100172
			2009. 09. 01.~현재	◈해피타임 : 20090100565
			2011. 10. 07~현재	◈상상노리 ; 20120100131
 가맹본부	플레이타임중앙(주)	가맹사업 경영	2013. 08. 01~현재	◈구름빵플레이타임 : 20130203
기정본구			2013. 08. 01~현재	◈베이비엔젤스 : 20130204
			2014. 07. 21~현재	◈똑똑블럭 : 20130185
			2014. 07. 21~현재	◈상상블럭 : 20130232
			2014. 11. 25~현재	◈블럭&퍼즐애플 : 20141243
			2014. 12. 15~현재	◈상상스케치 : 20141255
			2014. 12. 16~현재	◈키즈스포츠클럽챔피언 : 20150008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메가박스중앙(주)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경영예정	◆스템커피(STEM COFFEE): 20221298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구 년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소유자 등록만료일
APPLE TREE	서비스표	애플트리	41-2007-0021935 41-0173738-0000	2007-08-17 2008-09-04	플레이타임중앙(주) 2028-07-0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7년 9월 13일

2. 『애플트리』연혁

상 호	영업표지	대표	경 영 기 간	주 소
플레이타임중앙(주)	애플트리	이 재 원	2024.02.01.~ 현재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 (수서동, 성우빌딩)
플레이타임중앙(주)	애플트리	홍 정 인	2023.07.03.~ 2024.02.01.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 (수서동, 성우빌딩)
(주)플레이타임그룹	애플트리	홍 정 인	2023.03.01. ~ 2023.07.02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 (수서동, 성우빌딩)
(주)플레이타임그룹	애플트리	김 종 수	2018.03.27. ~ 2023.02.28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 (수서동, 성우빌딩)
(주)소프트플레이코리아	애플트리	김 종 수	2017.02.01. ~ 2018.03.26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 (수서동, 성우빌딩)
(주)소프트플레이코리아	애플트리	이 대 열	2016.04.28. ~ 2017.01.31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 (수서동, 성우빌딩)
(주)소프트플레이코리아	애플트리	전 경 식	2015.10.01. ~ 2016.04.28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501호 (수서동, 성우빌딩)
(주)소프트플레이코리아	애플트리	전 경 식	2007.09.13. ~2015.09.30.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4층 421호(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3. 『애플트리』 **업종**

аопт	업종				
8합표시	대분류	중분류(주요상품)			
애플트리	유아 관련 (교육 외)	일반 키즈카페컨셉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애플트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271.711)	
지역	2021. 12. 31.			2	2022. 12. 31.			2023. 12. 31.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7	4	3	5	3	2	3	3	-	
서 울	4	2	2	3	2	1	2	2	-	
인 천	1	1	-	1	1	-	1	1	-	
부 산	-	-	-	-	-	-	-	-	-	
대 구	-	-	-	-	-	-	-	-	-	
광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	-	-	-	-	-	-	-	-
세 종	-	-	-	-	-	-	-	_	-
경 기	2	1	1	1	-	1	1	-	1
강 원	-	-	-	-	-	-	-	-	-
충 북	-	-	-	-	-	-	-	-	-
충 남	-	-	-	-	-	-	-	-	-
전 북	-	-	-	-	-	-	-	-	-
전 남	-	-	-	-	-	-	-	-	-
경 북	-	-	-	-	-	-	-	-	-
경 남	-	-	-	-	-	-	-	-	-
제 주	-	-	-	-	-	-	-	-	-

5. 바로전 3년간 『애플트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 도	연 초	신 규 개 점	계 약 종 료	계 약 해 지	명 의 변 경	연 말
2021	10	0	6	0	1	4
2022	4	0	1	0	0	3
2023	3	0	0	0	0	3

6. 『애플트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애플트리』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 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	가민	생점/직영점으	l 수
丁正	영오/이금	8 합표시	등록번호	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플레이타임	20090100171		23/11	22/11	20/7
		키즈사이언스	20090100170	놀	0/0	0/0	0/0
		애플트리	20090100172	이	4/3	3/2	3/0
		해피타임	20090100565	시	0/0	0/0	0/0
	플레이타 임중앙㈜	상상노리	20120100131	설	7/0	7/0	5/0
		구름빵플레이타임	20130203	운	3/0	3/0	2/0
가맹본부		베이비엔젤스	20130204	영	4/1	3/1	2/2
		똑똑블럭	20130185		16/0	13/0	9/2
		상상블럭	20130232	및	25/0	24/0	19/0
		블럭&퍼즐애플	20141243		6/0	7/0	7/0
		상상스케치	20141255	관	9/6	8/6	3/9
		키즈스포츠클럽 챔피언	20150008	리	15/55	17/55	16/26

특수관계인	메가박스	스템 커피	20221298	커	0.77	0/7	0.70
(계열회사)	중앙(주)	(STEM COFFEE)	20221290	피	0//	0//	0/6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애플트리」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2023년		2023년 평	균 매출액(단의	위: 천원, 부	-가세미포함)		
지	역		연평균 [개출액	연평균 매출	들액(상한)	연평균 매결	틀액(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 한	면적 (3.3m²당)	하 한	면적 (3.3m²당)	- +
전	체	3	146,241	5,350	225,705	10,259	99,643	2,699	3
서	땅	2	해당없음						2
인	천	0	해당없음						0
부	산	0	해당없음						0
대	구	1	해당없음						1
광	ᆛ	0	해당없음						0
대	전	0	해당없음						0
울	산	0	해당없음						0
세	앙	0	해당없음						0
경	기	0	해당없음						0
강	원	0	해당없음						0
충	북	0	해당없음						0
충	남	0	해당없음						0
전	북	0	해당없음						0
전	남	0	해당없음						0
경	북	0	해당없음						0
경	남	0	해당없음						0
제	주	0	해당없음						0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 가맹본부 및 유통사)상으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POS가 설치되지 아니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 명원 상의 신고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띠

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비치된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애플트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3	4,37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구름빵 플레이타임』, 『베이비엔젤스,』, 『똑똑블럭』, 『애플트리』, 『키즈사이언스』, 『해피타임』, 『상상스케치』, 『키즈스포츠클럽챔피언』, 『블럭&퍼즐애플』, 『상상블럭』, 『상상노리』, 『플레이타임』을 포함하여 <u>총 325,222,633 원</u> 입니다.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가맹팀 02-2226-0970)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치 기 관 상 호	담 당 부 서	주 소	전 화 번 호
우리은행	기업금융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야탑동)	031-704-9431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예치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일 날 우리은행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플레이타임중앙(주)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VAT 포함)

			(211: 22, 771: 20)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비고
가 맹 비	22,0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불가
신규교육비	5,500	계약서 작성일 예치	교육 이후 반환불가
기획관리비 (도면제공비 등)	5,500		오픈 전 계약해지 시 반환불가
총 계		33,0	00
반환 조건	• 당사(당사기 공사공급계 하는 당사! 성 비율 에 의 대금을	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 에게 총 공사금액의 10%0	비 등을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 등의 공사완 공사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자재 등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 - /

※ 참조 - 가맹금의 반환사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 당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 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당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화을 요구하는 경우
- 3. 당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귀하가 가맹계약의 체결 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가 귀하에게 도달된 날부터 귀하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화을 요구하는 경우
- 5.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원·부재료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귀하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부터 귀하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이행보증금

계약 종료 시 잔존 채무액과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없음)

구 분	금액	지 급 기 한
이 행 보 증 금	10,000	계약서 작성일
반환 조건	•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참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계약기간 중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전액 또는 일부	충당된 경우
비고	• 반환 시 별도의 이자지급은 없는 것으로 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43,000]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고
가 맹 비	22,000	(VAT 포함)
신규교육비	5,500	(VAT 포함)
기획관리비 (도면제공비 등)	5,500	(VAT 포함)
보 증 금	10,000	(VAT 없음)

총 계 43,000 (VAT 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100평, VAT 별도)

구	분	지 급 대 상	금 액	면적 3.3m² 당	지 급 기 한	비고
인테리어	내 장	가맹본부 또는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156,000	1,560		
[한테디어]	간 판	시공능력이 있다고 가맹본부가 승인한 자	4,500	45	시공 시작	+ 0 0 1
집기•시설비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구매	130,000	1,300	3일전 또는	시공환경에 따라 비용
POS시스	스템/장비	가맹본부에게 시스템을	1,886	19	입고 3일	은 다를 수 있음
KIC	OSK	제공하는 지정업체 (비공개)	3,752	38	전까지	
스피드	EGATE	(비공개)	21,280	213		
홍보	홍보 • 판촉 		550	6	영업 개시	영업환경에 따라 비용
초 도 물 품 대 금		1021	6,500	65	3일 전까지	이 다를 수 있음
총	계	-	324,468	3,245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설비 또는 기기를 시공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정하는 사양에 따라 시공하거나 설치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설계도면 및 시안 또는 모델 및 사양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지도 감독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설계 브랜드(SI)관리비로 평당 금삼십삼만원(₩330,000)(VAT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가 귀하에게 영업지역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 입지는 당사의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귀하가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합니다.
- ② 당사는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영업지역을 귀하에게 제시합니다.
- ③ 귀하와 당사가 협의하여 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합니다.

영업지역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영업개시 전까지 해당 인력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와 종업원의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당사는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귀하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은 영업개시 전의 신규교육과 영업개시 후의 정기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하며, 세부 사항은 운영매뉴얼에 규정합니다.
- 2. 당사가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귀하에게 14일 전에 시간과 교육내용을 정하여 서면이나 온라인. 전화. 모바일상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영업개시 전 신규교육은 플레이타임중앙(주)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교육과 보수 육은 당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4. 귀하의 점포관리자가 신규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 5.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6.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교육 또는 훈련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① 정기지급금

구 분	정기지급금	
지 급 대 상	플레이타임중앙(주)	
금액	월납 금오십오만원(₩550,000)(VAT 포함)	
지 급 기 한	1. 월납의 경우 : 매월 말일까지 지급. 단, 최초 영업개시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수수료 매장의 경우 : 최초 영업개시일부터 해당월 익월 말일까지 지급	
비고	정기지급금 미납시 전산차단,발	주차단 및 계약해지 가능

② VPN사용료

구 분 VPN사용료

지급대상	플레이타임중앙(주)	
금 액(원) (VAT별도)	월 VPN사용료 85,500	
지 급 기 한	1. 일반매장의 경우: 매월 말일까지 지급. 단, 최초 영업게시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수수료 매장의 경우: 최초 영업개시일부터 해당월 익월 말일까지 지급	

③ 광고ㆍ판촉 분담금

구 분	광고∙판촉 분담금		
지 급 대 상	플레이타임중앙(주)		
금 액(원)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급 기 한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 환 조 건	광고·판촉행사를 미실시한 경우		
반환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④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분담

구 분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분담
지 급 대 상	현재 미지정
금 액(원)	추후협의

⑤ 점포환경 개선비용

구 분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 급 대 상	현재 미지정		
금 액(원)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회한 나머지 금액		
비고	자세한 내용은 V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지연이자

구 분	지연이자
지 급 대 상	플레이타임중앙(주)
금 액(원)	년 20%
비고	귀하는 금전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⑦ POS 사용료

구 분	POS 사용료		
지 급 대 상		플레이타임중앙(주)	
금 액(원) (VAT별도)	월POS사용료	₩28,500	

	월유지보수료	₩28,500
	문자사용료	SMS ₩10, LMS ₩30, MMS ₩70, 카카오톡 ₩7
지 급 기 한		말일까지 지급. 단, 최초 영업개시월은 일할계산 지급
	2. 수수료 매장의 경우 : 최	초 영업개시일부터 해당월 익월 말일까지 지급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796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54%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을 뺀 차액을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물품구입 및 판매시기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은 방문,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합니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당사는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 업을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서면으 로 그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 1. 양수인에 관한 사항
-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3. 계약유지 또는 해지에 관한 선택 여부에 관한 사항
- 나. 귀하는 위의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승인을 거절 하여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V-10-4 참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으로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 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 당사는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귀하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사용권의 권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 나. 당사가 제1항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또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변경전 모든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이 변경된 경우 즉시 귀하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귀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 과 기타 가맹점의 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은 당사와 귀하가 혐의하여 결정합니다.
- 라. 당사는 귀하에게 지식재산권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지식재 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포함)하여 귀하게 사용권을 부여하여 야 합니다.
- 마.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가. 당사는 가맹사업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대표자의 사망·소재 불명 등의 사유 제외)로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그 사 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나. 귀하는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V-10-4 참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 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① 양도인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별도로 당사에 지급 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② 양수인의 부담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만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과 당사는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맹비를 신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잔여계약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와 신규가맹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의 공통사항

양수인은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당사에 IV-1-3에 따른 신규교육비 및 이행보증금, IV-2-1에 따른 정기 지급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4) 경업금지 기간

귀하는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계약의 존속 중 국내외 전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 (독립점포 창업, 동업, 법인설립, 가맹본부 설립,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포함)할 수 없고,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계약상 영업지역 내 당 가맹사업의 영업과 동일한 키즈카페 영업(독립점포 창업, 동업, 법인설립, 가맹본부 설립,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포함)을 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귀하는 기간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이하 만료일이라 합니다)로부터 1주일이내 당사의 영업표지와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중단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운영매뉴얼, 교육자료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는 영업의 중지 및 영업표지 등을 철거했다는 증거를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당사가 제공한 상품을 당사에 반환할 수 없습니다.
- 4. 귀하가 영업지역에서 게재 중인 지역광고 등의 경우 종료일 전에 자진 철거·회수하여야 합니다.
- 5.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귀하가 가맹점 운영기간 동안 고객에게 판매(발행)한 이용권(다회권 등)은 가맹 계약 종료 후 1주일 내 고객에게 잔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원·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별지로 제공)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업자로부터 물품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물품 구입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서면·POS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안내드리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제 한 내 용 및 조 건	위 반 시 책 임
	 귀하는 당사의 사전 허가 없이 당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검수 받지 아니한 타사 상품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음료류 교 구	2.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로 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허가 없이 소비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판매·대여 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3. 귀하는 입점하는 마트 측이 정한 관리 방침과, 제반 영업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허가 없이 소비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판매·대여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가맹점간 형평성을 위하여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명	상 품 가 격(단위: 원 VAT 포함)	가격 통보 방법	
시설 이용료	7,000 ~ 8,000	니면구기	
어린이 음료	1,000 ~ 3,000	서 면 공 지	

위 표에 기재된 상품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합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	동일한 업종 영업표시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 키즈카페컨셉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상상노리 해피타임 키즈사이언스 애플트리 구름빵플레이타임 플레이타임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A-type(로드샵)

설 정 기 준	설 정 방 법		
행정동 당 1 점포	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후 별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쇼핑몰, 아울렛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쇼핑몰, 아울렛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하며, 본 정보공개서에서 '마트'라고 칭합니다)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B-type(샵인샵)

설 정 기 준	설 정 방 법
해당 마트 내로 한정 단, 입점하는 마트와 매장 임대차계약에 의거	가맹계약서에 해당 마트 주소 기재
입점하는 마트가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유치 가능	

3)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① A-type(로드샵)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1. 재조정 사유 발생 2. 당사 담당팀 검토 3.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4. 영업지역 변경 2개월 전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5.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 6.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변경 2개월 전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합의 하여 영업지역을 조정 (신규점포 입점 가능)

① B-type(샵인샵)

귀하는 입점하는 마트 내에서만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므로 영업지역 변경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입점하는 마트의 매장 운영계획에 의거 매장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귀하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입점하는 마트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가 부담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산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가맹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계약도 동일하게 해지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귀하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당사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점하는 마트의 임대차 재계약기간과 계약 만료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는 귀하가 계약의 종료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 거절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가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귀하가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

한 경우

- 3.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당사의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귀하가 부 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계약 종료 사유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1.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2.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3.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4.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5.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의 일반해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계약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1) A-type

- 1.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2. 귀하가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하거나 획득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3.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 4. 귀하가 정기지급금을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5. 귀하가 타사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 6.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7. 귀하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경우
- 8. 귀하가 상품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9.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 10.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11. 귀하가 판매하도록 지정되지 아니 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12. 귀하가 당사와 타사상품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13. 귀하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 14. 귀하가 당사의 허락 없이 당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 교육과 세미나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15. 귀하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 의 영업을 하는 경우
- 16. 귀하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 하는 경 우
- 17. 귀하가 당사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지 아니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8. 귀하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9. 귀하가 당사의 매뉴얼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0. 귀하가 노동법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1. 귀하가 2회 이상 가맹계약서 제30조제1항(상품공급 중단 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2.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23. 귀하가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경우
- 24.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 25. 귀하가 당사(당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요청한 경우에 공사대금 납 부를 연체하는 경우
- 26. 귀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7. 귀하가 고객 클레임 등으로 가맹본부 브랜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8.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플레이멤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급하지 아니하 거나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취급한 경우

(2) B-type

- 1.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2. 귀하가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하거나 획득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3.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 4. 귀하가 정기지급금을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5. 귀하가 입점하는 마트가 시행하는 홍보•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경우
- 6. 귀하가 타사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8. 귀하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경우
- 9. 귀하가 상품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0.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 11.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12. 귀하가 판매하도록 지정되지 아니 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13. 귀하가 당사와 타사상품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14. 귀하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 15. 귀하가 당사의 허락 없이 당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 교육과 세미나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16. 귀하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 의 영업을 하는 경우
- 17. 귀하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 하는 경우
- 18. 귀하가 당사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지 아니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
- 19. 귀하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0. 귀하가 당사의 매뉴얼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1. 귀하가 노동법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2. 귀하가 2회 이상 가맹계약서 제30조제1항(상품공급 중단 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3.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는 경우
- 24. 귀하가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경우
- 25. 귀하가 입점하는 마트가 정한 테넌트 관리 방침과, 제반 영업규칙을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 26.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 27. 귀하가 당사(당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요청한 경우에 공사대금 납 부를 연체하는 경우
- 28. 귀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9. 귀하가 고객 클레임 등으로 가맹본부 브랜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30.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플레이멤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급하지 아니하 거나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취급한 경우
 - ② 귀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 계약해 지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당사가 본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공동이 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 2.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와 약정한 서비스 등의 공급 또는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3.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 ③ ① 및 ②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계약의 즉시해지(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 ① 당사는 귀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 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 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 외
- 6. 귀하가 당사가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합니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② 귀하는 당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2.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 3. 당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4.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5. 당사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6.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 ①과 ②의 경우 당사와 귀하는 서면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법 개정 또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에서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 제1항의 경우 귀하는 양도하기 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전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며, 당사 가 승인을 거절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합니다.
- 3. 귀하는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4.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만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과 당사 는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맹비를 신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가맹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운영권을 승계한 것 으로 봅니다.
 - 1. 법인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 3. 법인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 6. 제4항 내지 제5항 제1호의 양수인 또는 새로운 법인대표자는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 야 하며, IV-1-3에 따른 신규교육비 및 이행보증금, IV-2-1에 따른 정기 지급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비를 신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제4항 내지 제5항 제1호의 양수인 또는 새로운 법인대표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①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상속인의 가맹점운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1. 귀하가 사망한 경우에 직계 상속인이 귀하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IV-1-3에 따른 신규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상속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승계의사를 통지 하여야 하며, 입점하는 마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승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사망일로 소급하여 종료됩니다.
- 3.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 ②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 경영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귀하는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계약의 존속 중 국내외 전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 (독립점포 창업, 동업, 법인설립, 가맹본부 설립,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포함)할 수 없고,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계약상 영업지역 내 당 가맹사업의 영업과 동일한 키즈카페 영업(독립점포 창업, 동업, 법인설립, 가맹본부 설립,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포함)을 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 A-type(로드샵)

- ① 귀하의 영업일은 명절과 법정 공휴일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승인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게 휴업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귀하는 가맹점에 휴업기간 및 휴업내용을 표시하여 고객들에게 휴업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업 시 간	영 업 일 수	비고
09:00 ~ 22:00	주 6일	문의: 가맹팀 02-2226-0970

나. B-type(샵인샵)

- ① 귀하는 영업일 및 휴무일, 영업시간에 대하여 입점하는 마트가 별도로 정하는 임대매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또는 1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영업을 중지하 거나 폐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점하는 마트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 니다.

또한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업 시 간	영 업 일 수	비고
입점하는 마트와 동일	입점하는 마트와 동일	문의: 가맹팀 02-2226-0970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워확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A-type(로드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B-type(샵인샵)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주 요 관 리 내 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와 귀하의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성격	분 담	비율	분 담 절 차	비고
		본 사 부 담	가 맹 점 부 담		미포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상품광고 와 가맹점 모집 광 고를 동시에 진행 하는 경우	광고비의 50%	광고비 5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 이 안분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 참 여 여부 결정→가 맹점 부담액 제시	대 중 매 체 광 고,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
8.1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 음	(명세서)	위 광고
플레이 멤버스	플레이멤버스 포인트 적립·사용 및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발행하는 쿠폰 취급	적립포인트 및 쿠폰 등으로 할인한 금액의 50%	적립포인트 및 쿠폰 등으로 할인한 금액의 50%	매 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전 월 총 할인금액을 집계하 여 50% 부담	-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가 맹점 부담액 제시 →가맹점 행사참여 결정→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 정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귀하가 당사에게 광고·판촉 활동에 필요한 디자인 및 시안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별도 비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 1. 귀하는 계약 기간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의 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승인 없이 당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 교육과 세미나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락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귀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

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가 제21조(비밀유지 의무)제3항 또는 제22조(경업금지 의무)제2항, 제26조(매뉴얼)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귀하가 계약의 일반해지 사유 또는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와 타가맹점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의 <u>평균 월매출액</u>의 6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귀하가 계약종료 후 당사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일의 익일(귀하에게 소진기간을 준 경우에는 소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1일당 금 오만원(\#50,000)씩 계산하여 당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당사의 요구에 의해 또는 귀하의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이 중도에 합의 해지되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계약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 귀하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매출액의 60%의 금액
 - 2. 계약기간이 6개월을 경과 한 경우 귀하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매출액의 30%의 금액
- 5. 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1호의 경우 귀하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여 월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근 타가맹점 5개를 기준(5개가 안 되는 경우 개점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하고, 1개의 가맹점도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평균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월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6. 본 계약상 금전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급 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년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처워 VAT포함)

		([<u> [위 : 전원 VAT포함)</u>
구 분	내 용	소 요 기 간	소 요 비 용
합계		45일 내외	-
개설상담 신청	- 가맹점 개설 상담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제공	1~3일	없 음
점포조사	- 상담 후 점포 조사	1~3일(숙고기간에 병행)	없 음
숙고기간	-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 가맹계약서 숙고 기간	14일(자문 시 정보공개서는 7일)	없 음
점포 확정 최종 협의	- 점포 확정 - 개설 승인	1일	점포 임대 비용
가맹계약 체결	- 계약체결 - 우리은행예치	1일	p12 참조
실측 및 견적 산출	- 점포 인테리어 실측 - 견적 산출	3~5일	p15 참조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26일	p17 참조
인·허가 및 교육이수	-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 등록 - 개점 전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p46 참조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학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지 급 절 차	1.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 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4. 분할 지급 시 절차 - ①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②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시 인력 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요	청시]
대상 및 내용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절 차	1.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2.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 부담	- 가맹본부 부담
비 고	- 문의: 가맹팀 02-2226-0970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대상 및 내용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절 차	1.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2.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3.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 부담	- 가맹점부담(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비 고	-문의: 가맹팀 02-2226-0970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비고
추가 창업	가맹점사업자 창업 투자비 지원	기존 가맹점사업자 추가 창업시	기존 가맹점 가맹계약기간 內	투자비 1,000만원 지원	

^{*} 신규오픈 가맹점 지원,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조건 및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A-type(로드샵), B-type(샵인샵) 공통)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 소 시 간	비 용 (단위 : 천원, VAT포함)	비고
신 규 교 육	약 10 일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교육	추 후 공 지		필 수 교 육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 해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가맹점관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가맹점관리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 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2226-097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 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worldplaytime.com]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 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지 2-1. 플레이타임중앙(주) 2022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지 2-2. 플레이타임중앙(주)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3. 점포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 ◈

[가맹희망자용]

가맹본부 플레이타임중앙(주)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전화 번호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일 : <u>20 년 월 일</u>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수령인 : (인)

위 ______는 점포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u>년 월 일</u> 수령하 였음을 확인 합니다.

지역

NO.	상호	대표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본부 플레이타임중앙(주)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전화 번호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일 : 20 년 월 일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수령인 : (인)

위 ______는 점포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u>년 월 일</u> 수령하

였음을 확인 합니다.

지역

NO.	상호	대표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4. 플레이타임중앙(주)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용)

	성 명	(인)	생년월일	
가맹희망자	주 소			
	연 락 처			
정보공개서	수령일시		수령장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수령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플레이타임중앙(주) (인)

.....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가맹본부용)

	성	명	(인)	생년월일	
가맹희망자	주	소			
	연 략	박 처			
정보공개서	수령	일시		수령장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수령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플레이타임중앙(주) (인)